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98

발의연월일: 2021. 7. 2.

발 의 자 : 윤준병 · 노웅래 · 안호영

양이원영・오영환・이수진(비)

임종성 · 정일영 · 정정순

최종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사이버학교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비중이 커지면서 이 기간 동안 사이버 학교폭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과 대책이 가능하도록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과는 별도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시·도교육청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지원을 담당하는 전 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의 내용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며, 같 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책을"을 "대책 및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부모에 대하여는 사례 중심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중 "정보통신망에 의한"을 "사이버"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 에"를 "사이버 학교폭력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
	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
	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 등
	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u>1의2.</u> ・ <u>1의3.</u> (생 략)	<u>1의3.</u> ・ <u>1의4.</u> (현행 제1호의2
	및 제1호의3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u>대책을</u> 담당하는 전담	대책 및 사이버 학교폭
부서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력에 대한 대응 지원을
	<u>.</u>

- ② ~ ⑦ (생 략)
- 8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⑨ ~ ⑫ (생 략)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저 (생 략)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 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 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 다. <후단 신설>
 - ③ ~ ⑤ (생 략)
-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 교목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 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8
	태조사의 내용에는 사이버 학교
	폭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u>한다.</u>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	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경우 학부모에 대하여는
	사례 중심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을 별
	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	20조의3(<u>사이버</u> 학교폭력 등)
	사이버 학교폭력에

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